

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업체명		
	성명(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 (전화번호:)		

「항만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

귀하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. 정관(법인만 제출합니다) 3.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.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토 확인	→	기안·결재	→	지정 통보
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	---	-------	---	-------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해양수산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